

<b>보도자료</b>	2011년 1월 21일(금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	[의결안건]			
	가. 전파정책기획과 다. 방송통신녹색기술팀	오상진과장(2210) 송상훈팀장(2190)	나. 기금팀	이승원팀장(2170)
[보고안건]				
가. 방송통신진흥정책과	오용수과장(2150)	나. 네트워크윤리팀	엄열팀장(2760)	

## 2011년 제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

### [의결안건]

#### 가.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 (첨부1 참조)

- 전파법 개정(전파법 개정 공포(‘10.7.23), 전파법시행령 개정 공포(‘10.12.31))에 따라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건(제정 2건, 개정 4건, 폐지 11건)을 심의하여 의결함
-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한 기준 등 2건의 고시를 제정하고,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건의 고시를 개정하며, 제·개정 권한을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 11건의 고시를 폐지

#### 나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(첨부2 참조)

-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## 다. 「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 (고시) 및 부속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('10.12.27)으로 '11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을 독자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업운영 관리규정 제정안을 심의 하여 의결함

### < 연구개발 관리규정 주요사항 >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, 과학기술기본법,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등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수용
  - (추진체계) PM의 역할, R&D 사업의 심의·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·사업심의위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(추진절차) 과제 기획·수행기관 선정→사업의 공고·평가·과제 관리→ 결과물의 활용·기술 이전 등 R&D 사업 절차
  - (추진방법) 사업비의 편성·집행·정산, 협약의 체결 등 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 수행 방법

## [보고안전]

### 가.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중소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, 제작, 편집, 송출, 유통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,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### 나. 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'09.10월 발표한 종합대책 세부과제에 대해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기술발전 추세, 스팸발송 경로 등을 고려하여 수정·보완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< 첨부 1 >

##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정비 주요내용

□ 고시 제정 : 2건

①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(안)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2분기에 한하여 전부 감면함

②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자재(안)

-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자재”의 고시 권한이 전파 연구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

※ 전자파강도: 방송국, 이동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의 정도로서 관련 기준 초과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

※ 전자파흡수율: 휴대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로서 관련 기준 초과시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하여 제조·수입·판매 불가

□ 고시 개정 : 4건

- 전파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,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칭변경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민원서식 통합 및 누락 서식 신설 등을 위한 고시를 개정함

< 개정고시 내용 >

	고시명	주요 내용
①	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	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, 서식 간소화 등
②	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	명칭변경: “한국전파진흥원”을 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”으로 변경
③	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면제과목 등에 관한 사항	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관련 내용 반영 등
④	무선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	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

□ 고시 폐지 11건

-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중 전자파보호기준 등 4개 고시를 전파연구소장에게,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처리기준 등 7개 고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함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함

< 위임에 따라 폐지되는 고시 내용 >

<p>전파연구소장 위임 고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자파보호기준</li> <li>② 전자파장해방지기준</li> <li>③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</li> <li>④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·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</li> </ul>
<p>중앙전파관리소장 위임고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</li> <li>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</li> <li>⑦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</li> <li>⑧ 전파감시 · 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</li> <li>⑨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 · 방법</li> <li>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</li> <li>⑪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</li> </ul>

□ 향후계획

- 고시 개정안 공포 · 시행: 2011. 1월

## **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안 주요내용**

### □ 주요 내용

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및 관리기관(한국전파진흥원)에의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
  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그 외의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
  -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 등 사무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, 업무수행의 세부방법을 규정함
  - 관리기관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,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
- 지출사업의 이월, 결손처분 사유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
  -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, 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
  -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
-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집행잔액 반납절차 등을 규정함

- 기금사업 수행기관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
  - 출연사업, 위탁사업, 용자사업, 출자 및 투자사업, 보조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예산비목 편성의 기준을 정함
  - 사업수행 단계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
-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의 제·개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담당 국장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